

# 2021학년도 장학금 지급 규정

군산미장초등학교

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추진코자 내규를 설정한다.

## 1 / 목적

- 교육의 기회 균등과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비 부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- 장학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금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.
-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.

## 2 / 기본 방침

- 학교장은 장학생 선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선정 위원회를 둔다.
  - ① 장학금 지급 선정은 '미장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'에서 심의하며, 위원은 교감(위원장), 교무(부위원장), 연구부장(간사), 1~6학년 부장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 
(단,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생 선발은 관련 업무담당자를 '간사'로 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한다.)
  -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학금 지급 선정 위원회를 대표한다.
  -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, 회의진행,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맡는다.
  - ④ 회의는 재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.
-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한다.
  - ① 수여기관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요건에 합당한 학생을 추천한다.
  - ② 통합지원 대상자 선별기준에 준하여 추천하며, 통합지원 대상 서열이 같을 경우에는 본교의 규정에 의거해 추천한다.
  - ③ 당해 학년도에서 장학금 대상자로서의 추천은 1회로 한다.
- 본교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

## 3 / 선정 기준

- 수여기관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요건에 합당한 학생을 먼저 추천하고 경합시 다음 우선순위로 선정한다.

우선 순위	항 목	내 용	비 고
1	소년·소녀가정 (가정위탁)	1의 항목에 해당되면서,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	항목의 해당여부는 담임교사 및 학교장 추천으로 길음하며,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
2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교육비 지급 대상자 선정 학생	"
3	한부모가정 학생	교육비 지급 대상자 선정 학생	"

4	차상위 가정	교육비 지급 대상자 선정 학생	"
5	기타 저소득층	교육비 지급 대상자 선정 학생	"
6	조부모가정 학생 장애인가정 학생	7의 항목에 해당되면서,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	가족관계 증명서 1부,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제출
7	다문화가정 학생	6의 항목에 해당되면서,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	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
8	담임교사 추천	1~7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,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	행동이 바른 모범 어린이, 성적이 우수한 어린이 등

#### ※ 기타 사항

- ▶ 동일 목적으로 타 장학금을 지원 또는 지급받은 적이 있거나, 현재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우선 제외.
- ▶ 외부장학금은 지급하는 기관(단체)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우선하며, 동일한 자격일 경우는 위의 심사기준을 적용.
- ▶ 동일 순위의 항목에서 대상자 선정이 안 될 경우
  - ① 졸업예정자(6학년) 대상 장학금의 경우 : 다자녀가정 >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
  - ② 재학생 전체 대상 장학금의 경우 : 고학년 > 다자녀 가정 >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  
으로 정하며,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함.
- 위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생겨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는, 순위에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
## 4 선정 방법

-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위임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한다.
- 장학생 추천 시 반드시 복수로 추천하여 장학금 선정위원회의 자체심의를 통해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.
-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수여 받는 학생은 졸업식 장학금에서 제외한다.
-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나, 부득이한 경우(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여 사항을 늦게 알려주는 경우 등)에는 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한다.
- 각종 장학금은 세외통장 입금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실에서 학부모의 통장으로 입금하나, 단체나 기관이 직접 수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금 지급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 ■ 부 칙 ■

1.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의 개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